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
커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
2021. 12. 30(목)

제233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
검 토 보 고 서

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
금천구의회 의원 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정 등
일부개정규정안

(의회사무국 소관)



의회운영위원회
(전문위원)

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규정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경위

가. 의안번호 : 제2177호

나. 제 출 자 : 윤영희의원(대표발의), 김경완의원, 조윤형의원, 강수정의원

다. 제출일자 : 2021. 12. 23.

라. 회부일자 : 2021. 12. 23.

2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이 전부개정(법률 제17893호, 2021.1.12. 공포, 2022. 1.13. 시행)됨에 따라 단순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「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 규칙」이 개정되어 회의 규칙을 인용하는 총 2건의 규정을 일괄 정비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예산조치

다. 입법예고 : 2021. 12. 23. ~ 12. 28.(의견 없음)

라. 기 타

1) 일부개정 조례안 : 별도 첨부

2)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도 첨부

5. 검토의견

- 본 규정안은 「지방자치법」이 전부개정(법률 제17893호, 2021.1.12. 공포, 2022. 1.13. 시행)됨에 따라 단순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「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 규칙」이 개정되어 회의 규칙을 인용하는 규정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본 규정안은 적법·타당하다고 판단됨.

-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정
-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

붙임 : 관련 법령 1부.

관련 법령

□ 지방자치법 [시행 2022. 1. 13.] [법률 제18497호, 2021. 10. 19., 일부개정]

제84조(회의록) ① 지방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의원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.

② 회의록에는 지방의회의 의장과 지방의회에서 선출한 지방의회의원 2명 이상이 서명하여야 한다.

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회의 결과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.

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회의록을 지방의회의원에게 배부하고, 주민에게 공개한다. 다만,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지방의회의 의장이 인정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.